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4

2020. 6. 1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이태성 의원(찬성의원 11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6.1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태성 의원)

1. 제안이유

서울시의 상생교류 사업 예산이 2017년 98억원(일반회계 82억, 기금 16억)에서 2020년 644억원(일반회계 626억, 기금 18억)으로 대폭 증가하고,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상생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상생교류 사업의 확대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기능 병행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됨.

나.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

○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심화[1]되고

1) 국내 총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5,184만명으로, 이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인구는 2,592만 명(50.0%)이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984조 6,300억원(51.8%)임

있어 서울시의 수요와 지역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과 상호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6월 현재 서울시와 타 지역 간 MOU 체결현황은 총 67건(광역 13, 기초 54)이며, 상생교류 협력예산은 644억원으로 2017년(99억원)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음.

- 또한, 과거에는 먹거리, 관광, 축제 분야 등의 교류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일자리,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상시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참고자료)

<연도별 상생교류 협력사업 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총 계	9,873	23,814	27,748	64,397
일반회계	8,228	19,052	26,276	62,645
기 금	1,645	4,762	1,472	1,752

다.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 운영 (안 제9조, 안 부칙 제2조)

○ 현행 조례는 상생교류 협력 촉진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교류

(행정안전부 2019.12, 전국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 통계청 2018).

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2]”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 ▸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 위탁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최근 5년(2016~2020)간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 사업 결정 등을 위한 지역 상생사업계획에 관한 심의를 네 차례 했을 뿐, 별도의 상생교류 관련 회의 개최는 없었음.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일시	안 건	심의결과
2016	6.15.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추진경과 및 사업계획 자문	자문
2017	1.16.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업계획 보고	원안가결
2018	1.30.~1.31.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업계획 보고	원안가결
2019	6.5.	지역상생종합계획 보고·자문	자문

○ 조례 제정(2015.10.8) 당시에는 상생교류 사업의 상당수가 대외협력

2)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는 ▸ 소방재난본부장을 포함한 4명의 시 공무원, ▸ 시의원 2명, ▸ 외부 위촉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됨.

기금으로 시행되고 사업의 성격도 유사해, 위원회의 추가적인 설치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에 대행토록 하였음.

○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도시 소멸과 일손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상생교류 사업의 중·장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상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행과 같이 대외기금 국내계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상생교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생교류 사업이 문화·예술·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교류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상생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독립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34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태성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제리, 이성배, 이병도, 봉양순
권수정, 임종국, 성흠제, 이정인
이영실, 채인묵, 김정태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급속한 도시화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가진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역할을 10명으로 구성된 대회협력기금의 국내협력계정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상생교류 사업 예산이 2017년 98억원(일반회계 82억, 기금 16억)에서 2020년 644억원(일반회계 626억, 기금 18억)으로 대폭 증가하고,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병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본부·국장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정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본부·국장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지역상생발전위원회)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8,000천원(연평균 9,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9,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15명(시의원 1명, 담당국장 1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정기 2회, 임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8,000천원(연평균 9,600천원)

- 총비용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제9조제3항)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소계(b)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총 비용(b-a)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39,000천원+업무추진경비 9,000천원=48,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13명×연 4회×5년=39,0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시의원(1명) 및 담당 국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5명×연 4회×5년=9,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